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20
----------	------

제출연월일 : 2026. 8.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조례 전반에서 혼용되고 있는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 신규 체육시설인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구성에 따라 사용료 부과 근거와 요금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탁구장 사용료가 유사 실내 구기종목인 배드민턴장 사용료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 확보하고 선동축구장 사용 활성화를 위해 조정하고, 별표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변경된 법령 제명과 모호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상 혼용되고 있는 ‘사용료’, ‘이용료’,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용어를 ‘사용료’로 통일하고, ‘사용자’, ‘이용자’ 등도 ‘사용자’로 통일함.
- 나. 신규 체육시설인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을 사용료 등 부과 대상 체육시설에 추가하고, 사용료 기준을 신설함.
- 다. 탁구장 사용료를 배드민턴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선동축구장 사용료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구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산정하고 별표에 명시함.
- 라. 공공체육시설의 계약 위반 수탁자에 대한 참여 제한, 무단 홍보물 설치 금지, 이용실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함.

마. 체육시설 사용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통일함.

바. 별표 제목에 시설명을 반영하여 적용 대상 시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함.

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

아. 용어 중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한 ‘불우청소년’을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령명을 현행 제명으로 정비함.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일부개정안)

6.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6. 7. 23. ~ 2026. 8. 12.(20일간)

나. 의견 내용: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의견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의견없음

9. 참고사항: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 체육진흥과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남시(이하“시””를 “하남시(이하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란 제1호에 의한 체육시설을”을 “이란”으로, “이용하거나”를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로, “이용하는”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전용으로”를 “전용(專用)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을 “체육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어린이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20인”을 “20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을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주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자”를 “사용자”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이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사용료 및 이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일”을 “전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2인 이상 경합될”을 “2명 이상 경합(競合)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체육회(시 장애인체육회 포함)”를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시 체육회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장애인체육동호회 포함)”을 “(장애인체육동호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품매매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농수산물 생산자의 전시 직판매나 건전생활 소비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판매 행사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3제5호 중 “경우 (다만, 체육진흥 및 학생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체육활동은 영리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육진흥 및 학생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체육활동은 영리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하남시 체육회(하남시장장애인체육회 포함)”를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시 체육회 등”으로, “체육시설의 전부”를 “시 체육회 등에 체육시설의 전부”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사용 및 이용시간”을 “사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1일 이용시간”을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정하여”를 “한정하여 사용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자”를 “사용자”로, “이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의2의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전용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를 것
2. 선동둔치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별표 2의2에 따를 것
3. 배드민턴장 사용료는 별표 2의3에 따를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체육시설 외의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를 것
5. 방송 사용료는 별표 4에 따를 것
6. 상업사용료는 별표 5에 따를 것
7.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를 것

제9조제1항 중 “1할(프로경기는 1.5할)”을 “10퍼센트(프로경기는 총 수입액의 15퍼센트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조제10호 및 제14호에 의한 유아”를 “유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 및 이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나목 중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애인체육회 포함)가”를 “시 체육회 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시 대표선수단(상비군을 포함한다)의 강화 훈련. 다만, 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라목 중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애인체육회 포함)”를 “시 체육회 등”으로, “대회(각 연1회에 한함)”를 “대회”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간 각 1회로 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중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애인체육회 포함)”를 “시 체육회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1명 포함) 및 장애인 단체”를 “1명을 포함한다) 및 장애인단체”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제1항제3호자목 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행사(단, 해당 단체 사용신청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만 감면 받을 수 있음)”를 “행사”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단체 사용신청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만 감면 받을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3호파목 중 “이용자”를 “사용자”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애인체육회 포함)”를 “시 체육회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체육단체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을 “체육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으로, “불우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하남시에”를 “시에”로, “한함)”을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감면 :”을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 및 이용료”를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의 2”를 “별표 2의2, 별표 2의3”으로, “사용료와 이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 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일”을 “전날”로,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행사 :”를 “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 체육시설”을 “사람에 대하여 체육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파손·망실”을 “파손·분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집행하고”를 “대집행(代執行)하고”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사용료산정”을 “사용료 산정”으로, “징수 할”을 “징수할”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래인체육회 포함)”를 “시장
이 시 체육회 등”으로, “이내로한다”를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남시체육회(하남
시장래인체육회 포함)는”을 “시 체육회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사용료(이용료)”를 “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
에”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60일전”을 “60일 전”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
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
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을 위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위탁운영 수탁자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서명		체육진흥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강 학
	팀장 직위·성명	체육지원팀장 김 승 국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박 기 헌 (031-790-555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u>하남시(이하“시”라 한다)</u> 가 관리·운영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u>하남시(이하 “시”</u> ----- -----.
2. 삭제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의한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을 위하여 <u>이용하거나</u> 방송·광고게시·공연 및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위하여 <u>이용하는</u> 것을 말한다.	3. ----- <u>이란</u> ----- ----- ----- <u>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u> ----- ----- <u>체육시설을 사용하는</u> ----- -----.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부를 일정기간 <u>전용으로</u>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 ----- <u>전용(專用)으로</u> ----- ----- -----.
5. “사용자”란 <u>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u>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5. ----- <u>체육시설을</u> ----- ----- -----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u>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u>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생략) 8.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u>어린이</u>를 말한다. 9. ~ 11. (생략) 1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u>20인 이상</u>이 인솔자를 따라 일일 또는 월간으로 동시에 사용 또는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3. · 14. (생략)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u>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u>이용자</u>의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	-----. <삭 제> 7. (현행과 같음) 8. ----- ----- -----<u>사람</u>을 -----. 9. ~ 11. (현행과 같음) 12. ----- <u>20명</u> ----- ----- ----- -----. 13. · 14.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 ----- <u>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주민의</u> ----- -----. ② ----- <u>사용자</u> ----- ----- -----
---	--

도자의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의2(안전관리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 4. (생 략)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
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
츠교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월간·주간 및 일
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
게 알려야 한다.

1. (생 략)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
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3.·4. (생 략)

③ (생 략)

<신 설>

마련-----.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안전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사용자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사용료-----

3.·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

	<u>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체육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u>전일까지</u>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u>의한</u>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자가 <u>2인 이상</u>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생략) 2. 시 <u>체육회(시 장애인체육회 포함)</u>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대회 3. 4. (생략) 5.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u>장애인체육동호회 포함</u>) 등의 체육 경기대회 6. (생략) ④ (생략) 제6조의3(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제6조(사용허가 등) ① ----- ----- ----- <u>전날</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따른</u> ----- ----- <u>2명 이상 경합</u> (<u>競合</u>)될 ----- -----. 1. (현행과 같음) 2. -- <u>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시 체육회 등”이라 한다)</u>-- 3. 4. (현행과 같음) 5. ----- --(<u>장애인체육동호회를 포함한다</u>)-----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사용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상품매매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농수산물 생산자의 전시 직판매나 건전생활 소비품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판매 행사는 예외로 한다.

5. 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사설강습 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체육진흥 및 학생 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체육 활동은 영리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6. (생략)

제6조의4(체육시설 사용·수익)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하남시 체육회(하남시장애인체육회 포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

-----.

1. ~ 3. (현행과 같음)

4. 상품매매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농수산물 생산자의 전시 직판매나 건전생활 소비품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판매 행사는 예외로 한다.

5. -----

경우. 다만, 체육진흥 및 학생 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체육 활동은 영리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6.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체육시설 사용·수익)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시 체육회 등

----시 체육회 등에 체육시설

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선동둔치체육시설은 오전 5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7조의2의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징수 한다.

의 전부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시간 등) ① -----
--사용시간-----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시간-----
-----.

제8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7조의2의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전용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것
2. 선동둔치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별표 2의2에 따른 것
3. 배드민턴장 사용료는 별표 2의3에 따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체육시설 외의 체육시설의 사용료

② 제7조의2 이외의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여건 및 이용실정을 감안하여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 시 월간 이용료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 사용시간을 감안하여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는 별표 3에 따른 것

5. 방송 사용료는 별표 4에 따른 것

6. 상업사용료는 별표 5에 따른 것

7.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 것

② -----

--고려하여-----

--한정하여 사용료를-----

-----.

③ ----- 사
용자-----

사용료-----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고려하여 -----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⑥ ~ ⑧ (생략)

제9조(체육시설을 이용한 수익금 등의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한 각종 경기대회 및 공연 등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 수입액의 1할 (프로경기는 1.5할)을 전용사용료 이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10조(입장권) ① 제9조제4항에 의한 입장권 판매 수익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3조제10호 및 제14호에 의한 유아 및 노인

4. ~ 8.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입장료는 어른은 500원으로 하고, 청소년 또는 어린이는 300원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할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체육시설을 이용한 수익금 등의 징수) ① -----

----- 10퍼
센트(프로경기는 총 수입액의 1
5퍼센트로 한다)-----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입장권) ① -----
따른 -----
-----.

-.

1. 2. (현행과 같음)

3. 유아 -----

4. ~ 8.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할증)

① -----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
부터 별표 6까지의 각종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생략)

나.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애
인체육회 포함)가 주최하
거나 주관하는 경기,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2. 100분의 80 감면

가. 삭제

나. (생략)

다. 하남시 대표선수단(상비
군 포함)의 강화 훈련(다
만, 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라.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애
인체육회 포함)에 등록된
가맹단체의 시장기, 시의
회의장기, 종목별협회장기
대회(각 연1회에 한함)
<후단 신설>

마.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애
인체육회 포함)에 등록된
가맹단체로서 체육시설이

----- 사용료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시 체육회 등이 -----

2. -----

나. (현행과 같음)

다. 시 대표선수단(상비군을
포함한다)의 강화 훈련. 다
만, 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라. 시 체육회 등-----

대회. 이 경우 연간 각 1회
로 한정한다.

마. 시 체육회 등-----

도시개발 등으로 멸실, 이
전이 불가피할 경우(대체
시설 확보 시 까지)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
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
는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
애인 단체 또는 법인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3.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나. ----- 따른

----- 1명을 포함한
다) 및 장애인단체 ----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

사람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
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생략)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
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
류지출신 포로가족

차. (생략)

카. 노인 및 노인 단체 또는
법인의 경기 및 행사(단,
해당 단체 사용신청자의 5
0퍼센트 이상이 감면대상
자인 경우에만 감면 받을
수 있음) <단서 신설>

타. (생략)

파. 경기도 문화의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체육시설
일일자유 프로그램 이용자
<신설>

는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현행과 같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
우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

차. (현행과 같음)

카. -----
----- 행사. 다
만, 해당 단체 사용신청자
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만 감면
받을 수 있다.

타. (현행과 같음)

파. -----

----- 사용자

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

<신 설>

4. 100분의 30 감면

가.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애
인체육회 포함)에 등록된
가맹단체의 경기 및 행사

나. (생략)

다. 도 및 시의 체육단체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에 근거한 수급자, 불우청
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 행사

라.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
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
하인 가정(강습프로그램에
한함)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
조제1호 따른 다문화가족

5. 100분의 1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

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
른 장기복무제대군인

4. -----

가. 시 체육회 등-----

나. (현행과 같음)

다. ----- 체육단체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 청
소년-----

라. 시에 -----

한정한다)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제1호 -----

5. ----- 감면: -----

하 여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판매 또는 그와 유사한 상행위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외의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관외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는 별표 2, 별표 2의 1, 별표 2의 2 및 별표 3의 사용료와 이용료를 50퍼센트 이상 할증하여 징수한다.

④ (생략)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② -----

----- 사용료-----
-----.

③ -----

별표 2의2, 별표 2의3 -----
사용료-----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 사용-----
-----.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귀책사유가

<신 설>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7일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2.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90
3.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있는 사람에게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 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

-----.

-----.

1. -----

경우: -----

2. -----

----- 전날-----

경우: -----

3. -----

----- 행사: -----

4.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u>경우</u> : 사용료 전액	4. ----- ----- ----- ----- <u>경우</u> : -----
제14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u> 은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입장한 사람은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생략)	제14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 ----- ----- ----- <u>사람</u> <u>에 대하여 체육시설</u> ----- ----- ----- -----.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생략) ②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u>소요되는</u>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필요한</u> ----- -----.
제16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 시 시설물 등을 <u>파손·망실</u> 또는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보상	제16조(사용자 책임) ① ----- ----- <u>파손·분실</u> ----- ----- ----- -----

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생 략)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의 최적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
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산정 등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공공요금 및 청소비용 등 관리비는 추가로 그 상당액을 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의2(체육회의 사용수익 허가) ①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 애인체육회 포함)에게 체육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을 5년 이내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대집행(代執行)하
고-----
-----.

제17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용료 산정 ----

---- 징수할 -----.

제17조의2(체육회의 사용수익 허가) ① 시장이 시 체육회 등---

----- 이내로 한다. -
----- 인정하
는 -----.

② -----

를 받은 하남시체육회(하남시장
애인체육회 포함)는 제8조에 따
른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시민체육활
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사용료(이용료) 징수·감면
및 반환

5.·6.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생략)

제20조(위탁업무 수행) ①·②
(생략)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60
일전까지 다음연도의 운영계획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 시 체육회 등은 -----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사용료 -----

5.·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위탁업무 수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60
일 전-----

-----.

제21조의2(사용자의 부대시설 설
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
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
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
·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생략) <u><신설></u> 제24조(시행규칙) 이 <u>조례</u>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을 위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u>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탁운영 수탁자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시행규칙) -- <u>조례의</u> --- ----- --.
---	---

[별표 1] <개정 2025. 8. 11.>

사용료 등 부과대상 체육시설(제7조의2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하남종합운동장	아리수로 600(망월동) 일원	
하남국민체육센터	아리수로 600(망월동) 일원	제1체육관 포함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아리수로 600(망월동) 일원	
선동둔치체육시설	선동 287-3 일원	
풍산멀티스포츠센터	덕풍북로 160(덕풍동)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역말로 71(덕풍동)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감이동 451	
위례복합체육센터	학암동 649	
감일근린공원3호 체육시설 축구장	신우실로 149-4(감이동) 일원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미사동 39 일원	

[별표 2] <개정 2026. 4. 7.>

전용사용료(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구분		사 용 료				비 고
				체 육 경 기		체육이외 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주경기장	육상장(트랙)	주 간		33,000	44,000	440,000	660,000	. 기본 사용시간 2시간 . 야간 사용시 조명(라이트) 시설 사용료는 별도임
	축 구 장	주간	일반	55,000	110,000			
			만18세 이하	27,500	55,000			
축구장(면당) (인조잔디 경기장)		주간	일반	55,000	110,000	165,000	220,000	
			만18세 이하	27,500	55,000			
실내 체육관		주 간		165,000	220,000	275,000	330,000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 무대조명 사용시 별도임
인라인스케이트장		주 간		66,000	88,000	-	-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 야간 사용시 조명(라이트) 시설 사용료는 별도임
테니스장(면당)		주 간		16,500	27,500	-	-	. 기본 사용시간 2시간 . 야간 사용시 조명(라이트) 시설 사용료는 별도임
농 구 장(면당)		주 간		33,000	55,000	-	-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족 구 장(면당)		주 간		33,000	55,000	-	-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수 영 장		주 간		-	660,000	-	-	. 기본 사용시간 4시간 . 전 레인 사용 기준
비 고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축구장의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 체육시설의 전기사용료는 실제사용료를 부과함. - 전기사용료 산출기초 : 실제사용료(전력사용량×kw단가)+부가가치세 10퍼센트 - 전기사용 kw당 단가는 한국전력공사 고시단가를 적용한다. ○ 주경기장의 육상장, 축구장을 모두 사용시 각각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육상장, 축구장 전용사용자가 다를 경우 경기.연습.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용사용을 허가함. ○ 기본사용시간에 관계없이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봄. ○ 관외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를 50퍼센트 이상 할증하여 징수한다. ○ 수영장은 매월 2, 4째주 일요일 주간에 한하여 대관한다.						

[별표 2의2]

선동둔치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구분		사 용 료			비 고
			체 육 경 기		월간정기 사용시	
			평 일	토·공휴일		
야 구 장	주간	일반	44,000	77,000	-	· 기본 사용시간 2시간 · 시설 사용료는 별도임 (체육 이외의 사용은 단체인 경우 사용료 1.5배 적용)
		만 18세 이하	22,000	38,500		
축 구 장 (잔디 경기장)	주 간		55,000	110,000	-	· 기본 사용시간 2시간 (체육 이외의 사용은 단체인 경우 사용료 1.5배 적용)
기타 부대시설	주 간		-	-	-	
비 고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처리한다. ○ 야구장·축구장의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한다. ○ 야구장, 축구장을 모두 사용 시 각각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기본사용시간에 관계없이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동호회 리그전 등 장기 사용하는 경우 연초 사용 대관 허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참가비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관외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를 50퍼센트 이상 할증하여 징수한다.					

[별표 2의3] <개정 2024. 5. 16.>

배드민턴장 사용료(제8조제1항제3호 관련)

○ 일일사용(1인 기준)

(단위 : 원)

구분		개 인			단 체			비고
		기 준	사용료		기 준	사용료		
			하남시 거주자	관외 거주자		하남시 거주자	관외 거주자	
체육경기 및 연습	성 인	1인 2시간	1,400	4,200	1인 2시간	1,000	3,000	
	어린이	1인 2시간	1,000	3,000	1인 2시간	800	2,400	
	청소년							
	노 인	1인 2시간	1,000	3,000	1인 2시간	800	2,400	

○ 1월 이상 사용(1인 4시간 기준)

(단위 : 원)

구분		개인			단체			비고
		기준	사용료		기준	사용료		
			하남시 거주자	관외 거주자		하남시 거주자	관외 거주자	
체육경기 및 연습	성인	1월 (30일)	45,000	105,000	1월 (30일)	30,000	84,000	
	어린이	1월 (30일)	30,000	84,000	1월 (30일)	24,000	63,000	
	청소년							
	노인	1월 (30일)	30,000	84,000	1월 (30일)	24,000	63,000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월 단체 사용료는 하남시체육회에 등록된 클럽 중 센터 내에 50인 이상 월 회원을 등록한 단체 및 하남시 관내 학교에서 30인 이상 수업으로 진행하는 단체에 한함.
- 일일 단체사용료는 20인 이상 인솔자가 동반하여 동시 입·퇴장자 및 상기 클럽에 한함.
- 사용자 및 이용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이용수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월정기권 사용자는 할인이 적용되는 대신 센터의 사정 및 보수로 인한 휴관 시 정산하지 않는다. 단, 월 5일 이상 휴관 시 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한다. (법정공휴일은 제외)
- 관외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를 50퍼센트 이상 할증하여

징수한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법령 및 조례 할인 대상자는 성인요금을 기준으로 할인한다.
- 토·일은 이용료 20퍼센트 할증하여 징수한다.

[별표 3] <개정 2026. 4. 7.>

사용료(제8조제1항제4호 관련)

1. 주경기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개인	단체	
주경기장	육상경기장		개인제한	전용사용료 준용	
	축구장		개인제한	전용사용료 준용	
보조경기장			개인제한	전용사용료 준용	
실내체육관			개인제한	전용사용료 준용	
테니스장(면당)			개인제한	전용사용료 준용	
선동 야구장			개인제한	전용사용료 준용	
선동 축구장			개인제한	전용사용료 준용	
감일 축구장			개인제한	전용사용료 준용	

2. 수 영 장

(단위 : 원)

구 분	월 회 원(자유이용)			1일 회원(1회)			단 체		
	어 른	노 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어 른	노 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어 른	노 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금 액	66,000	55,000	44,000	3,300	2,750	2,200	2,750	2,200	1,650
비 고	○ 월 자유이용은 주 6회 기준임 ○ 1일 회원의 경우 1일 2시간 기준임 ○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인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3. 헬스장, 에어로빅장(월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헬스장, 에어로빅	어 른 66,000	
	노인·청소년·어린이 55,000	

4.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사 용 료
인라인 스케이트장	1인 1일	사용구분 없음	1,100
	월 회원	사용구분 없음	11,000

5. 파크골프장 · 스크린파크골프장

(단위 : 원)

시설별	기 준	금 액	비 고
파크골프장 · 스크린파크골프장	1타석(팀)당 (최대 4명)	13,200(1부)	1부당 2시간 기준

6. 탁구장

○ 일일사용(1인 기준)

(단위 : 원)

구분		개 인			단 체			비고
		기 준	사용료		기 준	사용료		
			하남시 거주자	관외 거주자		하남시 거주자	관외 거주자	
체육경기 및 연습	성 인	1인 2시간	1,400	4,200	1인 2시간	1,000	3,000	
	어린이	1인 2시간	1,000	3,000	1인 2시간	800	2,400	
	청소년							
	노 인	1인 2시간	1,000	3,000	1인 2시간	800	2,400	

7. 강습프로그램 운영

(단위 : 원)

구 분	강 습 료
강습프로그램	○ 강습교실은 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금액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강습료를 조정할 수 있음

8. 사용료, 강습료의 할증 및 감액

1. 사용료 할증

- ① 1일 이용 시 토·공휴일은 25퍼센트까지 할증하여 징수할 수 있음.
- ② 관외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를 50퍼센트(수영장 200퍼센트) 이상 할증하여 징수한다.

2. 사용료 할인

- ①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이용 시에는 각 사용료 합계 금액의 20퍼센트까지 할인할 수 있음.
 - ② 장기 등록 선납일 경우 할인 할 수 있음.
(3개월 납부 5퍼센트, 6개월 납부 10퍼센트, 12개월 납부 15퍼센트까지 할인)
 - ③ 동호회, 클럽에 한해 1년 이상 장기 계약할 경우 30퍼센트 이내 강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테니스장에 한함)
 - ④ 그린카드 사용 시 10퍼센트 할인 적용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4. 그 밖의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25. 8. 11.>

방송 사용료(제8조 제1항 제5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T V		라 디 오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중계 방송	체육 경기	축 구 장	110,000	66,000	55,000	33,000
		실 내 체 육 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수 영 장				
		보 조 경 기 장				
	체 육 이 외 행 사		165,000	110,000	110,000	66,000
비고	○ 1일 1회 기준이며 기본사용시간 4시간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5]

상업사용료(제8조제1항제6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영 화 촬 영		주 간	220,000	4시간 기준
에드벌론 등의 계양에 의한 광고		1일 1개	55,000	-
광고물(게시 또는 부착) 개당, 면당(10m×1m 이내)		5일 이내	55,000	-
		1일 초과	11,000	-
		1년	330,000	
기타 물품판매이익		단가×수량	매출액의 10%	
비 고	○ 상업 사용 시 시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상업 사용 시 조명 및 전광판을 사용하게 될 경우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함. ○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업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에드벌론 및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6]

부속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제7호 관련)

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냉·난방		기계사용료 = 기본료(30,000)+실제 사용한 유류, 가스료 전기사용료 = 실제 사용한 전기료 * 월기본료 = 냉·난방기 및 부대동력사용설비의 실사용량×kW당 단가	
운동장전광판		기본료(220,000원)	기본사용시간 2시간
운동장 음향시설		기본료(22,000원)	기본사용시간 2시간
체육관 음향시설		기본료(22,000원)	기본사용시간 4시간
실내체육관 전광판		기본료(44,000원)	기본사용시간 4시간
부대장비 및 운동기구	탁 자	1개당 16,500원	
	발 언 대	1개당(대) 11,000원	
	접 의 자	1개당 1,100원	
	피 켓	1개당 1,100원	
	라인기계	1대당 5,500원(석회 미포함) 석회비용은 포당 시중 구매가 적용	
	줄다리기 줄	1개당(50m) 22,000원	
비 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체육시설 내 부대장비 등의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가 함. ○ 체육관 및 운동장 전광판, 음향 사용 시 조작요원 등은 사용자가 배치함.		